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95호, 1995년 1월 6일)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방화관리자의 선임요건중 교육기관에서 전공 또는 수료하여야 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소방관련학과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학과) 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소방안전관리론
2. 소방유체역학 및 약제화학
3. 소방수리학
4. 위험불성상
5. 소방시설의 구조원리
6. 방폭공학 및 방화공학
7. 건축일반
8. 전기일반
9. 가스일반

② 소방안전 관련학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1. 산업안전공학과
2. 전기공학과
3. 화학공학과
4. 기계공학과
5. 구급응급처치과
6. 건축공학과

제 3 조 (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인정 신청절차 등)

① 소방안전관련 교과목 및 학과를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의 서류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졸업증명서, 학위수여증, 기타 총장 및 학장이 인정하여 관련학과 학위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류 1부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등·초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신청을 받은 소방서장은 이를 확인하여 3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소방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서류를 보관하여 관리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④ 소방본부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관리상태를 분기별로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①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인정받은 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는 이 고시에서 정한 소방관련 교과목 및 학과로 본다.

20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통로·복도 또는 피트등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96호, 1995년 1월 6일)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이상의 소방대상물이 통로·복도 또는 피트등(이하 "연결통로"라 한다)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기준을 정하는 데 있다.

제 2 조 (연결통로로 연결된 하나의 소방대상물) 2이상의 소방대상물을 하나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는 연결통로의 구조는 다음 각호의 1의 것으로 한다.

1. 연결통로가 인접건물과 천정으로 이어져 있는 내화구조의 복도 및 통로로서 다음 각호의 1의 것으로 한다.

가. 복도의 길이가 6m 이상으로 벽이 없는 복도

나. 복도의 길이가 10m 이상으로 벽높이가 바닥과 천정높이의 1/2미만인 복도

- 2. 내화구조가 아닌 통로 및 복도로 연결된 경우
- 3. 작업공정상 콘베이어(승강장, 화물용등)로 연결된 건축물(동일대지에 한함) 플랜트설비로서 작업공정라인(가연성가스, 위험물 및 가연성물질등)이 연결되어 있는 건축물(동일대지에 한함)
- 4.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등 지하통로로 연결된 경우
- 5.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피트로 연결된 경우

제 3조 (적용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볼 수 있다.

- 1. 연결통로와 건축물사이에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것
 - 가. 자동방화샷터, 갑종방화문이 설치되어 있을 것
 - 나. 드랜쳐설비가 설치되어 자동방수 될 수 있을 것
 - 다. 연결부분의 통로·복도의 벽이 설치되어 있지 않을 것
 - 라. 지상에 있는 연결통로의 경우 연결부분의 전체가 불연재료의 것으로 설치되어 있을 것
- 2. 제1호의 규정에서 정한 것외에 시·도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민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된 것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특수장소의 용도변경시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용도로 변경되는 요건에 관한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97호, 1995년 1월 6일)

제 1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법시행령 제33조의 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장소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여부를 결정하는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 화재위험이 높은 용도에서 낮은 용도로 변경되는 요건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1. 건물의 구조, 설비가 화재 연소확대 요인이 적어지거나 피난, 화재진압 활동이 용이하도록 변경될 때
- 2. 불특정다수인 이용시설(판매, 집회, 관람시설등)에서 일정한 근무자가 이용하는 용도로 변경될 경우
- 3. 천정, 바닥, 벽등에 고정되어 있는 가연성 물품의 양이 줄어들었을 때
- 4.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비디오방에 한한다), 위락시설, 관람·집회시설, 판매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가스시설, 종교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에서 앞에서 제기하지 아니한 다른 용도로 변경될 때

부 칙

제 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스프링클러설비 등의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에 관한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98호, 1995년 1월 6일)

제 1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 17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제어반에 표시되어야 하는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조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 급수개

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2. 탬퍼스witch는 감시제어반에서 동작의 유무 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3. 급수개폐밸브의 작동표시 스위치에 사용되는 전기배선은 내화전선 또는 내열전선으로 설치할 것
4. 밸브의 완전개방시 수신기에서 확인표시등이 설치될 것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99호, 1995년 1월 6일)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 규칙 제 18조제4항제4호·제54조제3호·제85조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특수감지기의 종류 및 적용) ①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18조제4항제4호·제54조제3호·제85조제1항 및 제9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특수감지기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불꽃감지기
2.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3. 다신호방식의 감지기
4. 광전식감지기중 분리형감지기
②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유류취급장소등 급속한 연소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소방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제 85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감지기는 제 1항각호에서 정한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동조의 표에서 정한 부착높이 20미터 이상의 장소에 설치할 수 있는 감지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날로그방식의 감지기
2. 불꽃감지기
3. 광전식감지기 중 분리형감지기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방시설용 전선 및 단독형 화재감지기의 2차전지에 관한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100호, 1995년 1월 6일)

제 1 조 (목 적) 이 고시는 소방기술기준규칙 제 10조의2제2항·제4항, 제90조, 제96조의3 및 제 137조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용 배선 및 단독형 감지기의 2차전지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내화, 내열배선) 소방기술기준규칙 제 10조의2제2항 및 제 137조에서 규정한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내화배선
 - 가.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나. CV케이블(가교폴리에틸렌 비닐케이블), CD케이블(Combined Duct Cable)
 - 다. 실리콘 고무절연전선
 - 라. 연피케이블
 - 마.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 바. 기타 공산품규정에 의거 동등이상의 내화 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 내열배선
 - 가. 알루미늄 피복케이블
 - 나. CD케이블(Combined Duct Cable)
 - 다. 하이파론 절연전선

- 라. 4불화에틸렌 절연전선
- 마. 실리콘, 절연전선
- 바. 연피케이블
- 사. 기타 공산품 품질규정에 의하여 동등이상
의 내열성능이 있다고 주무부장관이 인정하
는 것.

제 3 조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접속단자의 표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1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옥내소화전 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과 같은 표지를 한다.

1. 단자에는 “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한다.
2. 옥내소화전 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 4 조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선등) 소방기술기준규칙 제90조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지기 회로의 배선은 다음과 같다.

1. 일반배선 사용시 제2조와 동일하여야 한다.
2. 아날로그식, 다신호식감지기나 R형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실드선등을 사용할 것.

제 5 조 (단독형화재경보기의 2차전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96조의3의 규정에 의한 단독형 화재경보기의 2차전지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주전원으로 상용전원을 사용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의 2차전지는 소방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용기계·기구등의 성능시험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성능시험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2. 주전원으로 건전지를 사용하는 단독형 화재경보기는 소방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검정품이어야 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하여야 할 대상물과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에 관한 기준

(내무부 고시 제1994-101호, 1995년 1월 6일)

제 1 조 (목 적) 이 기준은 소방기술기준규칙 제51조제3항이 규정에 의한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과 옥외가스주입구의 규격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 2 조 (옥외가스 주입구를 설치해야 할 소방대상물) 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의 옥외가스주입구를 설치해야 할 대상물은 다음과 같다.

1. 공장 및 창고로서 소방법시행령 별표4에서 정하는 수량의 1천배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취급하는 장소
2.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5호의 장소로서 바닥면적 900제곱미터 이상인 것.
3. 소방법시행령 제28조제4항제4호의 장소(주차대수 50대이상)

제 3 조 (옥외가스주입구의 규격등) ① 옥외가스주입구의 접결구 및 나사의 규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1. 접결구의 구조·모양·치수 “소방용기계기구등의 검정기술기준”중 “송수관의 검정기술기준”에서 정하는 송수구로 할 것.
2. 접결구는 직경 65mm 이상의 암나사로 할 것.
3. 주입구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것.
4. 주입구에는 접결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캡과 가로·세로 각각 30cm 이상의 적색 보호함을 설치하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옥외가스 주입구”라는 표시를 할 것.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